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위탁)」 공고문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위탁)」수행기관 모집 공고

2024. 1. 2.



20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위탁) 수행기관 모집 공고

‘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위탁)」 수행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역량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월 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업 내용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

- 지원규모: 1,000개사(7,000회)
- 예산규모: 42억원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24.12.13.(금)
- 사업수행기간: 계약체결일~2024.11.29.(금)
- 지원대상: 종합건설업(시평액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포함)
- 지원비용: 별도 계약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비 지급

사업참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1. 2.(화) 09:00~2024. 1. 12.(금) 17:00
신청방법	• 공단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에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 본부·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홈페이지에 공고된 세부사항 참고 * 신청 관련 문의는 각 광역본부 접수처로 하시기 바랍니다.(접수처 참조)
신청자격	• 수행요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의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또는 전기안전 분야) 설립 법인 * 참여 불가 기관: ① '23년 사업수행기관 중 업무수행능력평가 부적격(N) 등급 기관 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사업 공고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컨설팅(위탁) 사업계획서 10부 등
선정방법	• 사업추진전략, 기관여건 및 인력운영 계획,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수행기관 역량 및 성과관리계획, '23년도 업무수행능력평가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문의처: 052-703-0689(안전보건공단 건설사업부)
044-202-8927(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I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는 컨설팅 지원
-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확산하고,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 * 사업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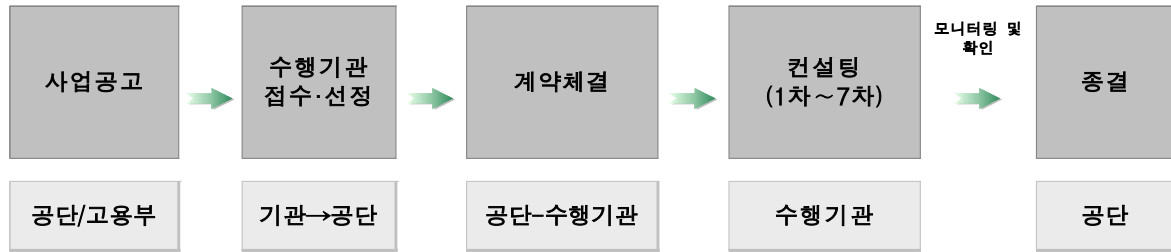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4.12.13.
- (사업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4.11.29.
- * 사업수행은 계약기간 내에서 사업수행비 지급 평가가 가능한일까지 연장 가능
- (사업규모) 1,000개 소(7,000회) ※(수수료 규모) 42억원

구분	계	서울 광역본부	부산 광역본부	광주 광역본부	대구 광역본부	인천 광역본부	대전세종 광역본부	경기 지역본부
사업장 수	1,000	160	140	140	140	120	140	160
지원횟수	7,000	1,120	980	980	980	840	980	1,120

- * 사업장별 7회(본사3회, 현장 4회) 방문 원칙
- * 광역(지역)본부별 사업장수(지원횟수)는 수행기관 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대상) 종합건설업체(토건 시평액 순위* 200위 초과) 또는 전문 건설업(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포함) 면허 보유 기업
- * '23.08.01. 공시 순위 기준
- ※ '22년, '23년에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KOSHA-MS 인증 기업 및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제외

○ (추진절차)



- (과업 내용) 수행기관은 '과업 내용' 및 '단계별 컨설팅 내용'에서 정하는 과업을 수행

* 세부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함

- (기관 선정) 안전보건공단 7개 광역(지역)본부별 심사를 통해 선정

□ (과업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 (중점 과업) 중소규모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담당 관계자와 함께 현장 순회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지도
- 사업주 면담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참여 및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이행 지도

* 최종 강평(CEO 면담) 및 현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시 지도사(기술사) 또는 심사원 자격자 1인 이상 참여

- 다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의 경우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이 수행한 경우 지도사 등이 수행한 것으로 인정

<컨설팅 수행 필수 착안 사항>

1. 최고경영자(CEO) 반드시 면담(예: 최초방문, 최종회의 시)
2. 가급적 많은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
3.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순회점검 등에 동행 지도
4. 서류 작성 중심, 안전담당 1~2명 대상의 교육 형식 컨설팅 지양

5. 초기에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상황을 진단하고 결과를 제시
6. 진단 시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등 활용, 설문조사 실시
7. 기업의 규모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실행가능한 방안 제시
8. 종합컨설팅보고서는 진단 결과와 구체적인 개선사항, 추가 보완사항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최종(7회차) 컨설팅에 직접 제공하고 브리핑

* 무작위 추출된 종합컨설팅보고서를 기관평가 시 핵심자료로 반영 예정

* 회차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양식 등 추후 별도 제공

- (수행요원 교육)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컨설팅 수행요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9쪽 참조)
- (우수사례 발굴) 컨설팅 지원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 (사업장 교육지원)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
- (산업안전보건 정보 제공)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자료 제작·보급
- (재정지원 등 연계) 교육 및 재정지원사업 등 안내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확산 등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및 위험성평가·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홍보물 배포

□ 단계별 컨설팅 내용

- (지원횟수) 건설업체별 7회(본사 3회, 현장 4회) 방문하여 지원하되, 현장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본사 4회 방문(1, 2, 3, 7회차 컨설팅 내용 수행)으로 종료 가능

* 컨설팅 기간 중 현장 미보유 또는 공사중지 등

* 2회차는 본사 담당자 및 업체 소속 모든 건설현장소장 대상 공동 컨설팅(집체교육 형식) 운영

○ (지원간격) 유해·위험요인 등 이전 회차 컨설팅 내용의 개선기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방문 간격을 운영하되

- 1단계(1, 2회차) 방문은 20일 이내(총 2일간 방문) 집중지원하고

- 3회차 이후 방문은 방문 회차별 일주일 이상 충분한 여유 기간을 확보한 다음 컨설팅 방문 지원

○ (단계별 수행절차)

단계(회차)	핵심사항	컨설팅 내용
1단계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파악)		본사와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체계 구축 실태를 확인하고 체계 구축 기본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1회차 본사	체계 구축 실태 파악 (CEO면담) ↓	(실태 파악) 위험성평가 중심의 컨설팅 방문 목적과 중대법 주요 사항 안내 -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파악(담당자 면담 및 서류 검토 병행) - CEO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 리더십 수준 파악 -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 사항을 설명(자가진단표 작성 안내)
2회차 현장	[공동 컨설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교육 ↓	(체계 기본 교육) 본사 담당자 및 업체 소속 현장소장(현장담당자)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인에 대한 이론교육 및 매뉴얼 작성 실습교육 실시 * 공동컨설팅: 업체 소속 모든 건설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 형식 운영
2단계(맞춤형 컨설팅 지원)		현장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본사의 지원 체계 중심으로 ① 본사 체계 구축 7대 핵심요소에 대한 개선과 ② 현장 위험성평가 이행 확산 및 고도화 지원
3회차 본사	본사 체계 구축 재점검 (자가진단표 활용) ↓	(체계 구축) 사업장 체계 구축 매뉴얼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컨설팅 - 사업장 맞춤형 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인 실행방안 컨설팅 ↳ 체계 구축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피드백 (취약요인 우선 컨설팅) (위험성평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위험요인 발굴→위험성결정→감소대책 수립·이행→근로자 공유)를 컨설팅
4회차 현장①	위험성평가 컨설팅① ↓	(위험성평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개선 ※ 위험성평가와 TBM에 대한 근로자 참여 중심으로 근로자 교육 실시 (체계 구축) 사업장 체계 구축 매뉴얼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컨설팅 -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중심으로 본사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5회차 현장②	위험성평가 컨설팅② ↓	(위험성평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개선 (체계 구축) 사업장 체계 구축 매뉴얼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컨설팅 -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중심으로 본사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6회차 현장③	위험성평가 컨설팅③ ↓	(위험성평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개선 (체계 구축) 사업장 체계 구축 매뉴얼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컨설팅 - 위험성평가 실행 절차 중심으로 본사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3단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본사 담당자와 함께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추가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등의 현장작동성이 확보되도록 유도
7회차 본사	CEO 면담 및 최종 강령	(이행 확산)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확산 향상 방안 제시 (CEO 면담) 안전보건 리더십 등 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의 지속적인 이행과 개선을 위한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당부

□ 사업예산 및 수수료

○ (사업예산) 42억원

○ (수수료) 공단 지급 수수료(600,000원/회) + 사업장 자체 부담 수수료*

* (종합건설) △(1천위 초과) 수수료 부담 없음 △(301~1천위) 수수료 30,000원/회
△(201~300위) 120,000원/회

** (전문건설) △(200위 초과) 수수료 부담 없음 △(20~200위) 수수료 30,000원/회
△(20위 이내) 120,000원/회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후 계약체결

○ (지급방법) 컨설팅 지원 계약횟수 및 회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 및 정산금 지급

○ (자부담 납부) 자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장에 1회차 컨설팅 종료 시 자부담 납부 안내 및 증빙 철저

* 사업장에서 다음 회차 시작 전까지 미납 시 컨설팅 즉시 종료

- 수행기관에서 사업장에 대해 자부담금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금성 물품 또는 현물(안전보건 관련 소모품 등)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부정 운영으로 간주하고 경고 조치

* 안전보건 관련 서적이나 자료 제공은 현물 제공에 미해당

○ (중단기업 등의 조치) 폐업 등 사유로 컨설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 횟수를 기준으로 정산 지급

□ 업무수행평가

○ (평가 시기) 2024년 11월 예정

○ (평가 방법) 공단에서 수행기관의 컨설팅 회차별 수행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를 중심으로 컨설팅 내용 평가

○ (평가 기준) '운영체계 및 관리', '업무성과 및 환류' 구분 평가

* '24년 업무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 등은 추후 안내

* 업무수행능력평가 등급별 기준표(예시)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N등급
점 수	900점 이상	899~800	799~700	699~600	600점 미만	부적격

○ (평가결과 반영) 다음 해 사업 참여 기관 선정 시 결과 반영

* 평가지역과는 관계없이 전년도 업무수행능력평가 등급별 점수 반영

- S등급은 다음 해 선정 우대 및 지원 규모 배정 우대

- C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 등에 대해 다음 해 선정심사 시 불이익(감점)을 주고, N등급(부적격)과 연속 2회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II

참여 신청 및 자격

□ **참여 신청 방법**

○ 참여 신청은 사업수행 희망 지역(공단 광역본부, 경기지역본부)을 구분하여 신청(사업 수행 희망지역 1개소만 신청)

□ **사업 참여 최소 및 최대물량 기준**

○ 수행기관의 신청물량은 공모단위 권역별 사업물량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최소 70회(10개소) 이상으로 신청

- 수행기관은 참여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사업(위탁) 수행요원 보유인력 기준의 최대 2배 이내로 희망 물량 신청 가능

- 1일 1개소까지 컨설팅 지원 가능

* 다만, 기사 자격자가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현장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최종 강평(CEO 면담) 시 지도사 또는 기술사 또는 심사원 자격자가 동반(2인1조) 하는 경우에 한해 1일 2개소까지 컨설팅 가능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사업의 경우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 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이 수행한 경우 지도사 등이 수행한 것으로 인정

* 수행요원이 같은 날에 동일한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병행은 불가

- 타 건설현장 대상으로 기술지도 1회 실시 가능

* 컨설팅 실시 일자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등 타 공단 위탁 사업 중복 불가

*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토요일은 기술지원 불가

□ 수행기관 자격(사업 공고일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종합진단기관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또는 전기안전분야)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 '23년 사업 수행기관 중 계약 해지·해제 기관 및 '23년도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부적합 등급(N등급) 기관과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공고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은 참여 불가
- 컨설팅 수행기관별 단독참여를 원칙(컨소시엄 형태 참여 불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행기관은 신청하는 광역본부에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수행요원이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담당하였는지 확인 요청 시 협조

□ 수행요원(컨설턴트) 자격(사업 공고일 기준)

- (자격) ※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 (건설 공사) 건축, 토목, 건설안전 기사 또는 산업기사에 한함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건축, 토목,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전기공사, 정보통신 기사 또는 산업기사에 한함
 - * 현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최종 강평(CEO 면담) 시 기사 이하 자격 소지자는 지도사(기술사) 또는 심사원 자격자 1인 이상과 동반 수행
 - 다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의 경우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이 수행한 경우 지도사 등이 수행한 것으로 인정
 - * 실무경력 산정 시 지정기관 실무경력과 안전보건업무 실무경력을 합산함
 - ② 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또는 전기안전*분야에 한함)
 - * 전기안전 분야의 경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한 컨설팅으로 한정함

③ 건설업 KOSHA-MS 심사원, ISO 45001 심사원

* 건설업 KOSHA-MS 심사원보 및 ISO 45001 심사원보 제외

- (교육) 상기 자격 조건에 해당되며 공단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수행요원 직무신규교육을 이수한 자

* '23년 컨설팅 사업 참여자의 경우 공단에서 정한 직무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컨설팅 수행 핵심 요소 등 수행요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교육 종류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기
직무보수교육	기존 수행요원 (‘23년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참여 경험자)	7시간 (집합교육)	사업 수행방법 등 교육	‘24.1.23. ‘24.1.30.
직무신규교육	신규 수행요원 (‘24년 체계 구축 컨설팅 신규 참여 예정자)	20시간 (집합교육)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24.1.24.~26. ‘24.1.31.~2.2.
전문교육	신규 및 기존 수행요원	35시간 (온라인교육)	세부 기술분야 교육	‘24.2월~

- (직무보수교육) 기존 수행요원(‘23년 사업 참여)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방법, 컨설팅 우수 사례, 개인정보보호교육, K2B 사용법, 청렴교육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 실시(7시간)
- (직무신규교육) 신규 수행요원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이해 중심의 집체 교육 이수(20시간)

* 선정심사 후 선정된 수행기관에 별도 공지 예정

- (전문교육) 전체 수행요원(기존·신규)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부 기술 분야(건축, 토목, 전기 등) 중심의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실시(35시간)

* '24년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교육이수 여부 가·감점 반영

* 선정심사 후 선정된 수행기관에 별도 공지 예정

□ 사업제한 조건

- 공단은 수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계약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시 납부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공단에 귀속처리 됨
- 컨설팅 사업 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공단에서 1차 경고하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별도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음 (단, 사회적 물의 여부는 심의회의에서 결정)

- 사업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사업추진 부진 판단 기준 ①사업착수 지연(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컨설팅 미실시) ②월별 누적 실적이 광역본부별(경기지역본부 포함) 지원 사업장수 평균진도율 기준 70% 미만인 경우 등

- 10월 말까지 총 계약물량의 80% 이상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계약 및 과업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해제 및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계약해제, 해지된 수행기관은 익년도 사업 참여배제 등 패널티 부과
-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기한 내 특별한 사유 없이 공단과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 배제

□ 기타

- 수행인력, 신청물량 등의 사업장 방문 컨설팅 지원 계획은 계약일 이후부터 사업수행기간 내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

- 사업(위탁) 수행요원 보유인력(참여신청서 제출기준) 대비 최대 2배 이내로 희망물량 신청하되,
 - 참여 신청 이후 채용예정인력의 채용 확인 서류는 '24.1.31(수) 18:00까지 제출(도착 기준)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할 수 있음
 - * 채용 확인 서류: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근로계약서
- 사업장별 확정된 수행요원에 대해 변경을 금지하나,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확인 서류* 제출 후 변경 가능
 - * 수행요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사업장의 혼란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 이외 변경 금지
 - * 퇴직 확인 서류: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서 또는 퇴직원 등

III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2024. 1. 2.(화) 09:00 ~ 2024. 1. 12.(금) 17:00

- 접수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접수기간 마지막 날에 보완 요구 시 보완서류는 1.15.(월) 17시까지 제출 가능
 -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탈락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천재지변, 사업내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공지하여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공지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게시 예정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24.1.12.(금)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접수:** 공단 광역본부 및 경기지역본부 건설안전부(팀)

주관기관	신청지역 (접수·선정 심사 권역)	주관기관	신청지역 (접수·선정 심사 권역)
서울광역본부 건설안전팀 02-6711-2871~2877 (우 04152)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봉래동, 우리빌딩)7층	서울광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강원동부지사	인천광역본부 건설안전부 032-510-0581~0588 (우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인천광역본부 경기북부지사 고양파주지사 경기중부지사
부산광역본부 건설안전부 051-520-0592~0590 (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산광역본부 울산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경기지역본부 건설안전부 031-259-7132~7145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3층	경기지역본부 경기서부지사 경기동부지사
광주광역본부 건설안전부 062-949-8791~8797 (우 6236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광주광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전북서부지사 전남동부지사	대전세종광역본부 건설안전부 042-620-5621~5628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3층	대전세종광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북북부지사
대구광역본부 건설안전부 053-609-0592~0598 (우 41936)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1층	대구광역본부 경북지역본부 대구서부지사 경북동부지사		

※ 접수장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정서(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계획서는 20매 이내로 사업계획서 착안사항(붙임 3)을 참조하여 "한글"(A4, 글자크기 12~13 point)로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분 10부 중 **9부는 참여신청 기관명이 확인되지 않도록** 해당 부분 처리 후 제출

○ 인력운영계획서 1부.

○ 수행요원 경력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①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② 채용 증빙 서류

- 수행요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자명부(기존직원)·가입증명서(신규직원)

○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수행요원 명단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첨1, 별첨2 참조하여 광역·지역본부별로 이메일 송부 :

j02@kosha.or.kr)

IV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 선정 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선정심사는 사업계획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5분 이내)으로 진행(선정심사일에 발표 불참기관은 탈락처리)

- 발표 자료는 선정심사일 이전까지 해당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에 제출

* 기타 사항은 접수장소(광역본부 및 경기지역본부)에서 안내

□ 선정 기준

-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평가지표(선정 기준 예시)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지표	선정 기준	배점
① 사업추진전략	○ 사업추진 방향	15
② 기관여건 및 인력운영 계획	○ 인력 배치·운영 등 컨설팅 수행 여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격·경력자 보유현황 등	25
③ 사업 추진내용 적정성	○ 신청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 전략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실적(경험)	20
④ 수행기관 체계 구축 컨설팅 역량 및 성과관리 계획	○ 사업 홍보 및 사업장 모집 계획 ○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모델 구축을 통한 체계 구축 확산 계획 ○ 기관 소속 직원 컨설팅 역량 강화 계획	25
⑤ 업무수행능력	○ 전년도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15
가점	○ 일자리 으뜸기업 ^① , 노사문화우수기업 ^② , 일터혁신 우수기업 ^③ 중 하나를 인증받은 기관	3

< 선정 기준 관련 착안사항 >

- 세부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심사
- 인력운영 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참여경력, 기술사, 지도사, 건설업 KOSHA-MS 심사원, ISO 45001 심사원 우대
- 신청물량이 일선기관 배정물량 보다 미달하더라도 선정심사 결과,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하지 않음

V

기타 행정사항

□ 선정심사: 2024. 1. 23.(화)까지

* 필요시 심사일정 변경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심사 후 접수·선정심사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발표 및 선정기관에 개별 통보

<첨부> 1. 참여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시 착안사항 1부.
3. 인력운영계획서(서식) 1부.
4. 수행요원 경력서(서식) 1부.
5.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1부.

[첨부1] 참여 신청서

20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자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건설공사, ☐ 전기·통신·소방) ☐ 건설안전진단기관 ☐ 산업안전지도사 법인 (☐ 건설안전, ☐ 전기안전)		지정현황 및 실적 ※ 해당없는 경우 생략 가능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정한계 ()개소 ()명 - 위탁현황 ()개소 ()명
신청지역 (수행회망)	() 광역본부/지역본부		희망물량	☐ 총 【 회 / 개사】
업무수행 능력평가	☐ '23년도 체계 구축 컨설팅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24년 신규 참여기관은 생략) - ()광역본부/지역본부 ()등급 : 계약물량(회/ 개사)			
참여기관	기관형태	기관명 및 주소 [지사인 경우 본사,지사 모두 작성]		수행요원 현황
	☐ 본사 ☐ 지사	【본사명】 대표자 : 【본사주소】 전화번호 : FAX :		☐ 컨설팅트(신규) : 전담【 명】, 겸직【 명】 ☐ 컨설팅트(기존) : 전담【 명】, 겸직【 명】 ※ 추가정보 현황(반드시 택1) ☐ 심사원 : 전담【 명】, 겸직【 명】 ☐ 지도사 : 전담【 명】, 겸직【 명】 ☐ 기술사 : 전담【 명】, 겸직【 명】 ☐ 기 사 : 전담【 명】, 겸직【 명】 ☐ 산업기사 : 전담【 명】, 겸직【 명】 ☐ 기 타 : 전담【 명】, 겸직【 명】
		【지사명】 대표자 : 【지사주소】 전화번호 : FAX :		
2024년도 『위험성평가 중심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위탁)』 을 수행하고자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기관 지정서(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0부(기관명포함 1부, 기관명제외 9부). ※첨부2. 사업계획서 작성시 착안사항 참고 4. (첨부3) 인력운영계획서 1부. 5. (첨부4) 수행요원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위탁), 기술지도 및 타사업장 지도 경력서 각 1부. 6. 수행요원별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전체. 7. 컨설팅 수행요원 명단(별첨 1 엑셀 양식, 원본 광역본부별 담당자 이메일 송부) 1부. 8. 컨설팅 수행요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첨 2 양식) 1부.				

※ 지정지역 및 한계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만 작성

※ 공모 신청지역은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공단 광역(지역)본부명으로 구분

※ 수행기관이 지역본부, 지사, 지회, 사무소, 출장소인 경우 “지사” 항목에 작성

[첨부2] 사업계획서 작성시 착안사항

아래 내용은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선정된 기관의 경우 본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

※ 허위 또는 미추진으로 평가될 경우 계약해지 또는 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등은 업무수행능력평가에 반영 예정

I. 사업추진전략

- 참여 신청기관 개요 및 현황
- 사업추진방향
 - 서류 구비 안내 중심이 아닌 중소 사업장 현실에 맞는 현장감 있는 컨설팅 방안
 - 실효성있는 위험성평가 시범실시·참관지도 및 위험성평가 교육 방안
 - 수행기관의 특성 및 수행 대상(지역)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산재예방 전략

II. 기관여건 및 인력운영 계획

- 인력 배치·운영 등 컨설팅 수행 여건
 - 수행 지역 및 지원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인력투입, 사업장 배분 등 인력 운영 계획 및 인력 추가 확보계획 등
- 컨설턴트 자격 및 경력자 보유 현황

III. 사업추진내용 적정성

- 신청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 전략
 -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이행 방안
 - 수행기관 자체적인 수행요원 모니터링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창의적 수행 전략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실적(경험)
 - 위험성평가 실시 경력 사례 횟수 등

IV. 수행기관 체계구축 컨설팅 역량 및 성과관리 계획

- 사업 홍보 및 사업장 모집 계획
 - 사업장 모집 계획 및 방법
 - 사업장 모집 목표 개수
-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모델 구축을 통한 체계구축 확산 계획
 - 우수사례 발굴·확산 계획
 - 우수사례 발굴 목표 개수
- 기관 소속 직원 컨설팅 역량 강화 계획
 - 소속 직원 역량 강화 계획 및 방법
 - 수행요원 1인당 교육 목표 시간

V. 업무수행능력

- 전년도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 평가 결과 문제점 및 수준 향상 방안 등

[첨부3] 인력운영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서식)

참여지역 ^①	00광역시/00도		참여기관명	00협회	
기관유형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건설안전진단기관 ☐ 산업안전지도사 법인		희망(신청)물량	000회 / 000개소	
전체인원 ^②	00명	위탁인원 ^③	4명	전담/겸직 ^④	전담 { 2 } 겸직 { 2 }

성명	고용 형태	참여 ^④	자격기준		위탁 사업 경력 (개월) ^⑥	기술 지도 경력 (개월) ^⑦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심사 경력 (개월) ^⑧	컨설팅 수행 물량 (개사)
			자격증	경력 ^⑤				
홍길동	정규직	전담	건설안전기사	5년	6	6	-	10개사
○○○	비정규직	겸직	건설안전기술사	3년	-	-	12	5개사
채용예정	정규직	전담						7개사
계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참여지역 : 공단일선기관명 기입
- ② 전체인원 : 수행기관 소속 전체 근로자수(사업주 제외)
-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요원수
↳ 채용예정 인력을 포함하여 작성
- ④ 전담/겸직 : (전담) 컨설팅(위탁)사업 전담인력 수 (겸직) 기술지도 등의 업무와 겸직인력 수
↳ 채용예정 인력을 포함하여 작성
- ⑤ 경력 : 자격취득 후 산업안전·보건 등 관련분야 경력(24년 사업 공고일 기준)
- ⑥ 위탁사업경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사업」 참여 경력(24년 사업 공고일 기준)
- ⑦ 기술지도경력 : 건설현장 기술지도 경력(24년 사업 공고일 기준)
- ⑧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경력 : 건설업 KOSHA-MS 또는 ISO45001 심사 경력

[첨부4] 수행요원 경력서

수행요원 경력서(서식)

인 사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기간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개월)				
신청물량	수행기관 신청물량	()개소	수행요원 담당물량	()개소		
국가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 .					
	. . .					
	. . .					
안전보건 실무경력	기관(사업장)명	근무기간		전담/겸직	참여분야	비고
	00재해예방	'15. 1. 1. ~ 현재까지(85개월)		전담	건설안전	
	00산업안전	'10. 1. 1. ~ '15. 12. 30.(72개월)		전담	건설안전	
	(주)OO기업	'21. 5. 1. ~ '21. 10. 30.(6개월)		전담	컨설팅	OO재해예방
						총 157개월

「위험성평가 중심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사업」 참여 경력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명부, 2. 자격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빙서류(다음 서류 중 택1)

① 안전보건 실무 경력증명서

②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go.kr)→개인→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출력

③ 근로계약서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선정심사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력기간

▣ 참여경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수행요원 참여 개월 “0” 처리

▣ 경력증명서 상에 안전보건 실무경력 여부가 불명확한 경력기간

[첨부5]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사업주관기관	공단 일선기관	관 할 구 역	지방노동관서
서울광역본부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서울서부지청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원주지청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서울남부·서울관악지청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및 성북구	서울동부·서울북부지청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태백·강릉지청, 영월출장소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부산북부지청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울산지청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창원·진주·통영지청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양산지청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광주지방노동청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전주지청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목포지청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과)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익산·군산지청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여수지청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대구지방노동청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구미·영주·안동지청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대구서부지청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포항지청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청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고양지청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부천지청
경기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평택지청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안양·안산지청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성남지청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 및 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및 영동군	청주지청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및 음성군	충주지청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 및 예산군·태안군	천안지청, 서산출장소